

부속서 3-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

제1부 – 일반주해

1. 이 부속서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의 해석 목적상,
 - 가. 특정 호 또는 소호에 적용되는 특정 기준 또는 특정 기준들은 그 호 또는 소호 바로 옆에 규정된다.
 - 나. 세변변경의 요건은 비원산지 재료에만 적용한다.
 - 다. 품목별 원산지 규정이 세변변경기준을 사용하여 정의된 경우, 그 규정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가 세변변경을 거친 경우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.
 - 라. 품목별 원산지 규정이 세변변경기준을 사용하여 정의되고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(HS)의 류, 호 또는 소호의 차원에서 특정 세변을 제외하도록 적시된 경우, 그 원산지 규정은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그 제외된 특정 세변으로 분류된 재료가 원산지 재료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. 그리고
 - 마. 호 또는 소호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상 선택기준의 대상이 되는 경우, 상품이 그러한 선택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, 규정은 충족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.

2. 이 부속서의 목적상,

부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(HS)의 부를 말한다.

류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(HS)의 류를 말한다.

호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(HS)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4단위를 말한다. 그리고

소호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(HS)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6단위를 말한다.

제2부 – 품목별 원산지 규정

제1부

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(제1류–제5류)

제1류

살아 있는 동물

0101 – 0106

제1류의 모든 동물은 완전 획득되어야 함.

제2류

육과 식용 설육(屑肉)

0201 – 0210

사용된 제2류의 모든 재료가 완전 획득된 생산

제3류

어류 · 갑각류 · 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(水生) 무척추동물

0301 – 0308

사용된 제3류의 모든 재료가 완전 획득된 생산

제4류

낙농품, 새의 알, 천연꿀,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

0401 – 0410

사용된 제4류의 모든 재료가 완전 획득된 생산

제5류

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

0501 – 0511

사용된 제5류의 모든 재료가 완전 획득된 생산

제2부

식물성 생산품(제6류–제14류)

제6류

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, 인경(鱗莖) · 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, 절화(切花)와 장식용 잎

0601 – 0604

사용된 제6류의 모든 재료가 완전 획득된 생산

제7류

식용의 채소 · 뿌리 · 괴경(塊莖)

0701 – 0714

사용된 제7류의 모든 재료가 완전 획득된 생산

제8류

식용의 과실과 견과류, 감귤류 · 멜론의 껍질

0801 – 0814

사용된 제8류의 모든 재료가 완전 획득된 생산

제9류

커피 · 차 · 마테(maté) · 향신료

0901 – 0902, 0910.91 – 0910.99

다른 소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

0903 – 0910.30

사용된 제9류의 모든 재료가 완전 획득된 생산

제10류

곡물

1001 – 1008

사용된 제10류의 모든 재료가 완전 획득된 생산

제11류

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, 전분, 이눌린(inulin), 밀의 글루텐(gluten)

1101 – 1109

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, 또는

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

제12류

채유(採油)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, 각종 종자와 과실, 공업용 · 의약용 식물, 짚과 사료용 식물

1201 – 1214

사용된 제12류의 모든 재료가 완전 획득된 생산

제13류

락(lac), 검 · 수지 · 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(extract)

1301 – 1302.13, 1302.20 – 1302.39

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

1302.19

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. 다만, 소호 제1211.20호의 것은 제외

제14류

식물성 편조물(編組物)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

1401 – 1404

사용된 제14류의 모든 재료가 완전 획득된 생산

제3부

동물성 · 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,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 · 식물성 납(蠟) (제15류)

제15류

동물성 · 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,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 · 식물성 납(蠟)

1501 – 1503, 1505 – 1522

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

1504

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

제4부

조제 식료품, 음료 · 주류 · 식초, 담배 · 제조한 담배 대용품(제16류–제24류)

제16류

육류 · 어류 · 갑각류 · 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(水生) 무척추동물의 조제품

1601 – 1602

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

1603 – 1605

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

제17류

당류(糖類)와 설탕과자

1701.12 – 1701.14, 1703 – 1704

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

1701.91 – 1702.90

다른 소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

제18류

코코아와 그 조제품

1801 – 1806

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, 또는
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
생산

제19류

곡물 · 고운 가루 · 전분 ·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

1901 – 1905

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, 또는
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
생산

제20류

채소 · 과실 · 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

2001 – 2009

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

제21류

각종 조제 식료품

2101 – 2106

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, 또는
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
생산

제22류

음료 · 주류 · 식초

2201 – 2209

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, 또는
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
생산

제23류

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(waste), 조제 사료

2301

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

2302 – 2309

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

제24류

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

2401

제24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회득되어야 함.

2402 – 2403

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, 또는
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
생산

제5부

광물성 생산품(제25류~제27류)

제25류

소금, 황, 토석류(土石類), 석고·석회·시멘트

2501

제25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회득되어야 함.

2502 – 2530

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, 또는
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
생산

제26류

광(鑛) · 슬래그(slag) · 회(灰)

2601 – 2621

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, 또는
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
생산

제27류

광물성 연료 · 광물유(鑛物油)와 이들의 중류물, 역청(瀝青)물질, 광물성 왁스

주:

이 류의 목적상, “화학반응”이란 문자 내 결합의 파괴 및 새로운 문자 내 결합의 생성,
또는 문자 내 원자의 공간배열 변경을 통하여 새로운 구조를 가진 문자를 만들어내는
가공(생화학 가공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

다음은 이 정의의 목적상 화학반응으로 간주되지 않는다.

가.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된 것

나. 용제(용매물을 포함한다)의 제거, 또는

다. 결정수의 침가 또는 제거

제2710호의 목적상, 다음 공정들은 원산지의 지위를 부여한다.

가. 상압증류법: 석유가 증류탑에서 끓는점에 따라 분획된 후 그 증기가
응축하여 상이한 액화 분획물이 되는 분리공정

나. 감압증류법: 분자증류법보다 낮지 않지만,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에서
증류

2701 – 2716

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, 또는
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
생산

제6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(제28류-제38류)

주1:

제6부의 규칙 1부터 규칙 7까지에서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이 부의 류 또는 호에
해당하는 상품은 그러한 규칙에서 달리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.

주2:

주1에도 불구하고, 상품이 이 부의 원산지 기준에 명시된 적용가능한 세번변경기준 또는
적용가능한 부가가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이다.

규칙 1: 화학 반응 원산지

한쪽 또는 양 당사국 내에서 화학 반응의 결과로 생산된 제28류부터 제38류까지에
해당하는 상품(제3828호에 해당하는 상품을 제외한다)은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.

주:

이 부의 목적상, “화학반응”이란 문자 내 결합의 파괴 및 새로운 문자 내 결합의 생성,
또는 문자 내 원자의 공간배열 변경을 통하여 새로운 구조를 가진 문자를 만들어내는
가공(생화학 가공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

다음은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화학반응으로 간주되지 않는다.

가.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된 것

나. 용제(용매물을 포함한다)의 제거, 또는

다.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

규칙 2: 정제

정제된 제28류부터 제38류까지에 해당하는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. 다만, 그
정제는 한쪽 또는 양 당사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다음의 결과를 발생시켜야 한다.

가. 불순물의 80퍼센트 이상이 제거된 경우, 또는

나. 불순물의 감소 또는 제거 결과로 다음에 적합한 상품이 된 경우

- 1) 의약품, 의료용, 화장품용, 수의용, 또는 식용 물질
- 2) 분석, 진단, 또는 실험실용 화학제품 또는 시약
- 3) 미량요소에 사용되는 구성요소 또는 성분
- 4) 특수 광학용
- 5) 건강과 안전을 위한 무독성용
- 6) 생명공학용
- 7) 분리공정에 사용되는 캐리어, 또는
- 8) 핵등급용

규칙 3: 혼합 및 배합

제30류, 제31류 또는 제33류부터 제38류까지에 해당하는 상품(제3808호에 해당하는 상품은 제외한다)은 미리 결정된 명세서에 따라 재료의 의도적이고 비율이 통제되는 혼합 또는 배합(분산을 포함한다)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 내에서 발생하여, 그 결과 투입재료와 다르고 그 상품의 목적 또는 용도와 관련된 다른 본질적인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가지는 상품이 생산된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.

규칙 4: 입자 크기의 변화

제30류, 제31류 또는 제33류에 해당하는 상품은 의도적이고 통제된 상품의 입자크기의 변형(중합체 용해와 그 후의 침전에 의한 미소화를 포함하고 단순 분쇄 또는 압착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)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 내에서 발생하여, 그 결과 결과물의 목적에 관련된 정의된 입자 크기, 정의된 입자 크기 분포 또는 정의된 표면적을 가지면서 투입재료와 다른 본질적인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가진 상품이 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.

규칙 5: 표준 물질

제28류부터 제38류까지에 해당하는 상품은, 표준 물질의 생산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.

이 규칙의 목적상, “표준물질”(표준 용액을 포함한다)은 제조자에 의해 보증된 정확한 순도 또는 비율을 가진 것으로 분석, 검정, 또는 참조용에 적합한 조제품을 말한다.

규칙 6: 이성체 분리

제28류부터 제38류까지에 해당하는 상품은 이성체 혼합물로부터 이성체의 유리 또는

분리가 한쪽 또는 양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.

규칙 7: 분리 금지

인조 혼합물에서 하나 이상의 물질을 분리한 결과로서 한쪽 또는 양 당사국 내에서 세번이 변경된 제28류부터 제38류까지에 해당하는 상품은 유리된 물질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 내에서 화학반응을 거치지 않았다면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되지 않는다.

제28류

무기화학품, 귀금속 · 희토류(稀土類)금속 · 방사성원소 · 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
무기화합물

2801 – 2853

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, 또는
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
생산

제29류

유기화학품

2901 – 2942

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, 또는
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
생산

제30류

의료용품

3001 – 3006

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, 또는
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
생산

제31류

비료

3101 – 3105

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, 또는
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
생산

제32류

유연용 · 염색용 추출물(extract),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, 염료 · 안료와 그 밖의 치색제,
페인트 · 바니시(varnish), 퍼티(putty)와 그 밖의 매스틱(mastic), 잉크

3201 – 3215

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, 또는

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

제33류

정유(essential oil)와 레지노이드(resinoid), 조제향료와 화장품·화장용품

3301 - 3307

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, 또는

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

제34류

비누·유기계면활성제·조제 세제·조제 윤활제·인조 왁스·조제 왁스·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·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·조형용 페이스트(paste)·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터(plaster)를 기본 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

3401 - 3407

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, 또는

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

제35류

단백질계 물질, 변성전분, 글루(glue), 효소

3501 - 3507

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, 또는

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

제36류

화약류, 화공품, 성냥, 발화성 합금, 특정 가연성 조제품

3601 - 3606

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, 또는

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

제37류

사진용이나 영화용 재료

3701 - 3707

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, 또는

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

제38류

각종 화학공업 생산품

3801 – 3826

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, 또는
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
생산

제7부

플라스틱과 그 제품, 고무와 그 제품(제39류-제40류)

주1:

제7부의 규칙 1부터 규칙 5까지에서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이 부의 류 또는 호에
해당하는 상품은 그러한 규칙에서 달리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.

주2:

주1에도 불구하고, 상품이 이 부의 원산지 기준에 명시된 적용가능한 세번변경기준 또는
적용가능한 부가가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이다.

규칙 1: 화학 반응 원산지

한쪽 또는 양 당사국 내에서 화학 반응의 결과로 생산된 제39류 및 제40류의 상품은
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.

주:

이 부의 목적상, “화학반응”은 문자 내 결합의 파괴 및 새로운 문자 내 결합의 생성,
또는 문자 내 원자의 공간배열 변경을 통하여 새로운 구조를 가진 문자를 만들어내는
가공(생화학 가공을 포함한다)이다.

다음은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를 결정하는 목적상 화학반응으로 간주되지 않는다.

가.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된 것

나. 용제(용매물을 포함한다)의 제거, 또는

다.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

규칙 2: 정제

정제된 제39류 및 제40류에 해당하는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. 다만, 그
정제는 한쪽 또는 양 당사국 내에서 발생하고 다음의 결과를 발생시켜야 한다.

가. 불순물의 80퍼센트 이상이 제거된 경우, 또는

나. 불순물의 감소 또는 제거 결과로 다음에 적합한 상품이 된 경우

1) 의약품, 의료용, 화장품용, 수의용, 또는 식용 물질

2) 분석, 진단, 또는 실험실용 화학제품 또는 시약

- 3) 미량요소에 사용되는 구성요소 또는 성분
- 4) 특수 광학용
- 5) 건강과 안전을 위한 무독성용
- 6) 생명공학용
- 7) 분리공정에 사용되는 캐리어, 또는
- 8) 핵등급용

규칙 3: 혼합 및 배합

제39류 및 제40류에 해당하는 상품은 미리 결정된 명세서에 따라 재료의 의도적이고 비율이 통제되는 혼합 또는 배합(분산을 포함한다)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 내에서 발생하여, 그 결과 투입재료와 다르고 그 상품의 목적 또는 용도와 관련된 다른 본질적인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가지는 상품이 생산된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.

규칙 4: 입자 크기의 변화

제39류에 해당하는 상품은 의도적이고 통제된 상품의 입자크기의 변형(중합체 용해와 그 후의 침전에 의한 미소화를 포함하고 단순 분쇄 또는 압착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)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 내에서 발생하여, 그 결과 결과물의 목적에 관련된 정의된 입자 크기, 정의된 입자 크기 분포 또는 정의된 표면적을 가지면서 투입재료와 다른 본질적인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가진 상품으로 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.

규칙 5: 이성체 분리

제39류에 해당하는 상품은 이성체 혼합물로부터 이성체의 유리 또는 분리가 한쪽 또는 양 당사국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.

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

3901 – 3926
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, 또는
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
생산

제40류 고무와 그 제품

4001 – 4017

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, 또는
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
생산

제8부

원피·가죽·모피와 이들의 제품, 마구, 여행용구·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, 동물
거트(gut) [누에의 거트(gut)는 제외한다]의 제품(제41류-제43류)

제41류

원피(모피는 제외한다)와 가죽

4101 - 4115

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, 또는
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
생산

제42류

가죽제품, 마구, 여행용구·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, 동물 거트(gut) [누에의
거트(gut)는 제외한다]의 제품

4201 - 4206

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, 또는
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
생산

제43류

모피·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

4301 - 4304

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, 또는
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
생산

제9부

목재와 그 제품, 목탄, 코르크와 그 제품, 짚·에스파르토(esparto)나 그 밖의 조물
재료의 제품, 바구니 세공물(basketware)과 지조세공물(枝條細工物) (제44류-제46류)

제44류

목재와 그 제품, 목탄

4401 - 4421

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

제45류

코르크(cork)와 그 제품

4501 - 4504

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

제46류

짚 · 에스파트로(esparto)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, 바구니 세공물(basketware)과 지조세공물(枝條細工物)

4601 – 4602

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

제10부

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, 회수한 종이 · 판지[웨이스트(waste)와 스크랩(scrap)], 종이 · 판지와 이들의 제품(제47류-제49류)

제47류

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, 회수한 종이 · 판지[웨이스트(waste)와 스크랩(scrap)]

4701 – 4707

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, 또는

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

제48류

종이와 판지, 제지용 펄프 · 종이 · 판지의 제품

4801 – 4823

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, 또는

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

제49류

인쇄서적 · 신문 · 회화 · 그 밖의 인쇄물, 수제(手製)문서 · 타자문서 · 도면

4901 – 4911

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, 또는

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

제11부

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(제50류-제63류)

제50류

견

5001 – 5003

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

5004 – 5007

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, 또는
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
생산

제51류

양모 ·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 · 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

5101 – 5113

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, 또는
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
생산

제52류

면

5201 – 5212

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, 또는
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
생산

제53류

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, 종이실(paper yarn)과 종이실로 만든 직물

5301 – 5311

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, 또는
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
생산

제54류

인조필라멘트,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(strip)과 이와 유사한 것

5401 – 5408

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, 또는
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
생산

제55류

인조스테이플섬유

5501 – 5516

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, 또는
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
생산

제56류

워딩(wadding) · 펠트(felt) · 부직포, 특수사, 끈 · 배의 밧줄(cordage) · 로프 · 케이블과

이들의 제품

5601 – 5609

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, 또는
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
생산

제57류

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

5701 – 5705

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, 또는
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
생산

제58류

특수직물, 터프트(tuft)한 직물, 레이스, 태피스트리(tapestry), 트리밍(trimming), 자수천

5801 – 5811

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, 또는
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
생산

제59류

침투·도포·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, 공업용인 방직용 섬유제품

5901 – 5911

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, 또는
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
생산

제60류

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

6001 – 6006

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, 또는
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
생산

제61류

의류와 그 부속품(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만 적용한다)

6101 – 6117

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. 다만, 그 생산품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 내에서 재단 및
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함.

제62류

의류와 그 부속품(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편물은 제외한다)

6201 – 6217

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. 다만, 그 생산품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함.

제63류

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, 세트, 사용하던 의류·방직용 섬유제품, 넝마

6301 – 6308

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. 다만, 그 생산품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함.

6309 – 6310

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, 또는
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
생산

제12부

신발류·모자류·산류(傘類)·지팡이·시트스틱(seat-stick)·채찍·승마용 채찍과
이들의 부분품, 조제 깃털과 그 제품, 조화,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(제64류–제67류)

제64류

신발류·각반과 이와 유사한 것, 이들의 부분품

6401 – 6406

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, 또는
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
생산

제65류

모자류와 그 부분품

6501 – 6507

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, 또는
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
생산

제66류

산류(傘類)·지팡이·시트스틱(seat-stick)·채찍·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

6601 – 6603

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, 또는
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
생산

제67류

조제 깃털·솜털과 그 제품, 조화,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

6701 – 6704

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, 또는
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
생산

제13부

**돌·플라스터(plaster)·시멘트·석면·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, 도자제품,
유리와 유리제품(제68류–제70류)**

제68류

돌·플라스터(plaster)·시멘트·석면·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

6801 – 6815

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, 또는
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
생산

제69류

도자제품

6901 – 6914

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, 또는
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
생산

제70류

유리와 유리제품

7001 – 7020

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, 또는
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
생산

제14부

**천연진주·양식진주·귀석·반귀석·귀금속·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, 모조
신변장식용품, 주화(제71류)**

제71류

**천연진주·양식진주·귀석·반귀석·귀금속·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, 모조
신변장식용품, 주화**

7101 – 7118

다른 소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, 또는
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
생산

제15부

비금속(卑金屬)과 그 제품(제72류-제83류)

제72류

철강

7201 - 7229

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, 또는
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
생산

제73류

철강의 제품

7301 - 7326

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, 또는
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
생산

제74류

구리와 그 제품

7401 - 7419

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, 또는
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
생산

제75류

니켈과 그 제품

7501 - 7508

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, 또는
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
생산

제76류

알루미늄과 그 제품

7601 - 7616

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, 또는
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
생산

제78류

납과 그 제품

7801 – 7806

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, 또는
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
생산

제79류

아연과 그 제품

7901 – 7907

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, 또는
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
생산

제80류

주석과 그 제품

8001 – 8007

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, 또는
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
생산

제81류

그 밖의 비금속(卑金屬), 서멧(cermet), 이들의 제품

8101 – 8113

다른 소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, 또는
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
생산

제82류

비금속(卑金屬)으로 만든 공구 · 도구 · 칼붙이 · 스푼 · 포크, 이들의 부분품

8201 – 8215

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, 또는
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
생산

제83류

비금속(卑金屬)으로 만든 각종 제품

8301 – 8311

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, 또는
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
생산

제16부

기계류 · 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, 녹음기 · 음성재생기 · 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

기록기 · 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 · 부속품(제84류-제85류)

주:

호에 상품 관련 소호와 “부품” 및/또는 “부속품” 관련 소호가 모두 포함되는 경우, “부품” 및/또는 “부속품” 관련 소호는 제외하고, 아래에 정의된 규칙 대신 “다른 소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,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”이라는 규칙이 적용된다.

제84류

원자로 · 보일러 · 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

8401 – 8487

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, 또는
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
생산

제85류

전자기기와 그 부분품, 녹음기 · 음성 재생기 · 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 · 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 · 부속품

8501 – 8548

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, 또는
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
생산

제17부

차량 · 항공기 · 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(제86류-제89류)

제86류

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 · 차량과 이들의 부분품, 철도용이나 궤도용 장비품과 그 부분품,
기계식(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) 각종 교통신호용 기기

8601 – 8609

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, 또는
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
생산

제87류

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 · 부속품

8701 – 8716

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, 또는
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
생산

제88류

항공기와 우주선, 이들의 부분품

8801 – 8805

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, 또는
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
생산

제89류

선박과 수상 구조물

8901 – 8908

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, 또는
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
생산

제18부

광학기기 · 사진용 기기 · 영화용 기기 · 측정기기 · 검사기기 · 정밀기기 · 의료용 기기, 시계,
악기,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(제90류-제92류)

제90류

광학기기 · 사진용 기기 · 영화용 기기 · 측정기기 · 검사기기 · 정밀기기 · 의료용 기기,
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

주:

호에 상품 관련 소호와 “부품” 및/또는 “부속품” 관련 소호가 모두 포함되는 경우, “부품”
및/또는 “부속품” 관련 소호는 제외하고, 아래에 정의된 규칙 대신 “다른 소호의
재료로부터의 생산,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
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”이라는 규칙이 적용된다.

9001 – 9033

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, 또는
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
생산

제91류

시계와 그 부분품

9101 – 9114

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, 또는
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
생산

제92류

악기와 그 부분품과 부속품

9201 – 9209

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, 또는
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

생산

제19부

무기 · 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(제93류)

제93류

무기 · 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

9301 – 9307

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, 또는

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
생산

제20부

잡품(제94류-제96류)

제94류

가구, 침구 · 매트리스 · 매트리스 서포트(mattress support) · 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,
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램프 · 조명기구, 조명용 사인 · 조명용 네임플레이트(name-
plate)와 이와 유사한 물품, 조립식 건축물

9401 – 9406

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, 또는

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
생산

제95류

완구 · 게임용구 · 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

9501 – 9508

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, 또는

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
생산

제96류

잡품

9601 – 9619

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, 또는

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
생산

제21부

예술품 · 수집품 · 골동품(제97류)

제97류

예술품 · 수집품 · 골동품

9701 - 9706

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, 또는
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
생산